

광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1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26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1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선우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변론종결 2022. 3. 18.

판결선고 2022. 4. 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3. 18. 선고 2020가소35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14. 12:53경 C은행 관계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의 기존 대출금 7,430,000원을 상환하면 20,000,000원을 대출할 수 있으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7,430,000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같은 날 14:16경부터 14:1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7,43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인터넷사이트 ‘F’에 7,251,000원 상당의 팔찌 및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2020. 5. 14.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팔찌 및 목걸이를 매수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14:23경 피고 명의 E은행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방식에 따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진주터미널로 팔찌 및 목걸이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 계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입금받아 E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7,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할 당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팔찌 및 목걸이를 판매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 판사 김효진